

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가합101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김백영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택현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28.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2023. 2. 9. 체결된 별지 기재 채무부담 약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의 E에 대한 민사소송 조정에 따른 채권

- 1) E은 2018. 9. 6. F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포함하여 각 계약은 그 체결일자로 특정한다), 2018. 9. 14.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원고 A, B는 2020. 9. 5.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를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000,000원은 2020. 9. 7.에, 잔금 615,000,000원은 2020. 11. 2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B는 위 2020. 9. 5.자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2020. 9. 5. 계약금 75,000,000원, 2020. 9. 7. 중도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3)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2020. 11. 6. E과 F 사이의 위 2018. 9. 6.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280,000,000원의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20카합10707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해운대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 4) E은 2020. 11. 28. 원고 A, B에게 'E은 2021. 4. 30.까지 위 원고 C의 2020. 11. 6.자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금 수령을 동시에 이행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위약금 75,000,000원과 별도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이행 확약을 하였다.
- 5) 그럼에도 E이 2021. 4. 30.까지 위 이행 확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 A, B는 2021. 6. 7. E에게 E과의 2020. 9. 5.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3234호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 지급한 135,000,000원의 반환 및 위 이행 확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375,000,000원 합계 5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4. 28. 원고 A,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6) 이에 E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2022. 9. 6. 원고 A, B와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으나, E은 조정에 따라 그 지급기일까지 원고 A, B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이하 위 조정을 '관련 민사조정'이라 하며, 위 조정에 의하여 E이 원고 A,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

1. E은 원고 A, B에게,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에 관한 2020. 9. 5.자 매매 관련 매매대금 반환금 및 위약금으로 400,000,000원을 임의지급하되(원고 A, B의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E의 임의변제를 말한다), 2022. 12. 5.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3. 6. 31.까지 나머지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약 E이 2022. 12. 5.까지 위 150,000,000원을 임의지급하지 않거나, 2023. 6. 31.까지 위 250,000,000원을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E은 원고 A, B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하락)

나. 원고 C의 E에 대한 민사판결에 따른 채권

1) F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원고 C은 2020. 11. 3. E을 상대로, F과 E 사이의 2018. 9. 6.자 매매계약 및 I이 E에게 2018. 9. 10.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1101호로 채권자취소소송(이하 '원고 C의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7. 13. 'F과 E 사이의 2018. 9. 6.자 매매계약을 1,308,499,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I과 E 사이의 2018. 9.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E은 원고 J에 1,508,4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E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6. 15.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의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가 335,000,000원 감소한 것에 따라 'F과 E 사이의 2018. 9. 6.자 매매계약을 973,499,230원2)

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I과 E 사이의 2018. 9.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E은 원고 J에 1,173,4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2나55012호).

3) E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다2537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10. 12.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2023. 10. 20.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원고 C의 E에 대한 판결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다. E의 이혼 및 처분행위

1) 피고는 1975. 9. 10. E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가, 2022. 10. 4. E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가사조정 신청을 하였고(울산가정법원 K,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2022. 12. 13.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다. 위 조정법원은 위 2022. 12. 13. 조정기일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2023. 1. 16. 아래 제2, 3항 기재 채무부담 조항(이는 별지 기재 채무부담 약정 내용과 동일하고, 이하 '이 사건 채무부담 조항'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강제조정 결정은 2023. 2. 9.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

1. 피고와 E은 이혼한다.
2. E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2023. 1.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E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E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23. 1. 31.까지 9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E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피고와 E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5. 피고와 E은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E은 변호사 L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E에 대하여 원고 A, B는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을, 원고 C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인데,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은 E과 피고가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이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및 그에 포함된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은 E과 피고의 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상당한 재산분할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 A, B의 이 사건 조정금 채권이 이 사건 채무부담 조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원고 C의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 확정일 이후인 2023. 10. 20.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 C의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22. 9. 6. 선고된 점, ② 위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E이 원고 C에 지급해야 하는 가액배상 범위가 일부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배상 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E의 항소에 따라 변론종결일이 변동됨에 따라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의 시가도 함께 변동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의 E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E의 채무초과 여부

가)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 갑 제5,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부담 조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2023. 2. 9. 기준 E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순번 제3 내지 제7번의 적극재산 가액은 각 부동산에 대한 E의 매수가액으로서 실제 가액보다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의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가액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번 제8번의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위 부동산의 매수가액으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위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울산 울주군 M아파트 N호 (이하 '이 사건 울산 아파트'라 한다)	440,000,000	2023. 2.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갑 제15호증의 1
2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	1,260,000,000	2023. 8. 2. 강제경매결정에 따른 감정평가액	갑 제13호증
3	울산 울주군 O 임야 6612m ² 중 232/6612 지분	35,700,000	2018. 5. 14. 매수가액	갑 제8호증의 9
4	울산 남구 P 임야 6612m ² 중 330/6612 지분	50,000,000	2018. 7. 16. 매수가액	갑 제8호증의 10
5	밀양시 Q 임야 13005m ² 중 172/13005 지분	30,160,000	2018. 8. 10. 매수가액	갑 제8호증의 11
6	울산 중구 R 임야 1088m ² 중 428/1088 지분	51,600,000	2019. 2. 12. 매수가액	갑 제8호증의 12
7	밀양시 S 임야 3569m ² 중 496/3569 지분	42,000,000	2019. 4. 3. 매수가액	갑 제8호증의 13
8	부산 해운대구 T건물 U호	110,000,000	2018. 8. 6. 매수가액	갑 제8호증의 14

1	울산 울주군 M아파트 N호 (이하 '이 사건 울산 아파트'라 한다)	440,000,000	2023. 2.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갑 제15호증의 1
합계	2,019,460,000			

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부담 조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2023. 2. 9. 기준 E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원고들은, E이 이 사건 이혼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L에게 부담하는 용역비(보수금) 채무 20,270,023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수금 채무는 이 사건 이혼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채무는 E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원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조정금 채무(지연손해금 포함)3) = 이 사건 판결금 원금 510,000,000원 + 2021. 6. 29.부터 2023. 2. 9.까지의 지연손해금 99,093,698원	609,093,698	갑 제1호증
2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4)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다만, 원고 J의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위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만을 E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1,173,499,230	갑 제2, 16호증
3	2018. 9. 14. V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자 제외)5)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에 관하여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제65394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24. 6. 2.까지 원금 322,622,435원에 대하여 이자 25,338,258원이 발생하였으나, 2023. 2. 9. 기준의 이자를 산정할 근거가 없어 원금만을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322,662,43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4	2018. 9. 21. V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자 제외)6) 이 사건 울산 아파트에 관하여 2018. 8. 2.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제110134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4. 1. 16. 기준 대출채무 원리금이 94,292,142원이나, 원금과 이자 액수를 구분할 수 없어,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서(갑 제8호증의 1) 상 채무 금액인 90,000,000원을 원금으로 보고 그 원금만을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90,000,000	갑 제8호증의 1, 10호증
5	W 주식회사가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의 임차인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설정한 질권의 피담보채무7) 질권설정 채권최고액 기준	240,000,000	갑 제11호증의 7
6	X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8) 부산 해운대구 T건물 U호에 관하여 2019.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제30795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갑 제8호증의 14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실제 금액이 이 사건 이혼소송 조정신청서(갑 제8호증의 1)에 기재된 50,000,000원이라 주장하므로, 위 금액으로 계산한다.	50,000,000	갑 제8호증의 1, 8호증의 14
합계	2,485,255,363		

다) 결국 2023. 2. 9. 당시 E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465,795,363원(= 소극재산 2,485,255,363원 - 적극재산 2,019,460,000원) 초과하였는바, E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다. E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채무부담 조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물론 E도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2023. 2. 9.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이르기까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면, 적어도 위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인 2023. 2. 9.에는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혼소송의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이혼사유로 E이 가사에 소홀하고 피고를 무시·학대하였다는 점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E이 그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상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재산상 문제는 원고들이 E을 상대로 제기한 각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이혼소송에서 E은 소송대리인으로 L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소개하여 선임하게 된 것으로 그 보수 또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 상의 재산분할 액수 등은 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이혼소송 당시 E은 원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조정금 및 판결금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그 소유 재산보다 많아,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에서 정한 1,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혼 후 약 11개월이 지난 2024. 1.

18. 제출된 이 사건 소장상 피고의 주소는 E 소유의 이 사건 울산 아파트로 되어 있고, 피고가 2024. 1. 29. 직접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위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울산 아파트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E의 주소지이자 이 사건에서 E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된 주소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혼 이후에도 피고와 E은 같은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은 E에게 관련 민사조정예 따라 원고 A, B에 대한 최소 4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고, 원고 C의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1심 판결에서 E에게 약 1,500,000,000원 상당의 가액배상채무가 인정된 이후에 제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은 원고들이 E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에 피고가 채권자로 참가할 집행권원을 확보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개연성이 크고, 피고와 E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고, 피고와 E은 서로 통모하여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의 E이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을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을 통해 원고들 등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은 피고와 서로 통모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준재심의 절차가 아닌 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위 강제조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4. 6. 11. 및 2024. 8. 1.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위 강제조정결정이 아니라 E과 피고 사이의 2023. 2. 9.자 채무부담 약정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E과 피고 사이의 위 강제조정결정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가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소송상의 상계, 청구의 포기·인낙, 9) 재판상의 화해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점 10)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는 재판상 화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현행법상 채권자가 그 재판상 화해 등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채권자취소권은 소송 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소에 의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며, 재판상 화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케 되는 경우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의 사해의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그 소송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1),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이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소송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한편, 이 사건 채무부담 약정에 대한 전부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중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목

판사황지현

판사김은솔

별지

채무부담 합의 또는 2023. 2. 9. 채무부담 합의 또는 2022. 12. 13. 채무부담 합의를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채무부담 합의는 모두 동일한 채무부담 약정으로, 그 일자만 위 약정이 포함된 강제조정 결정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달리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 청구취지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 1,308,499,230원 - 위와 같이 감소한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의 시가 335,000,000원

3) = 이 사건 판결금 원금 510,000,000원 + 2021. 6. 29.부터 2023. 2. 9.까지의 지연손해금 99,093,698원

4)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다만, 원고 J의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위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만을 E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5) 이 사건 해운대 아파트에 관하여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제65394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24. 6. 2.까지 원금 322,622,435원에 대하여 이자 25,338,258원이 발생하였으나, 2023. 2. 9. 기준의 이자를 산정할 근거가 없어 원금만을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6) 이 사건 울산 아파트에 관하여 2018. 8. 2.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제110134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4. 1. 16. 기준 대출채무 원리금이 94,292,142원이나, 원금과 이자 액수를 구분할 수 없어, 이 사건 이혼조정신청서(갑 제8호증의 1) 상 채무 금액인 90,000,000원을 원금으로 보고 그 원금만을 소극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7) 질권설정 채권최고액 기준

8) 부산 해운대구 T건물 U호에 관하여 2019.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제30795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갑 제8호증의 14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실제 금액이 이 사건 이혼소송 조정신청서(갑 제8호증의

1)에 기재된 50,000,000원이라 주장하므로, 위 금액으로 계산한다.

9)인천지방법원 1996. 12. 18. 선고 96가합4356 판결 참조

10)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1995), 816~817쪽 참조

11)서울지방법원 2003. 7. 28. 선고 2002가합28338 판결 참조